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의 원활한 장외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 신설).
-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5항 신설).

II. 검토의견

1. 투자중개업자 장외거래(안 제166조)

- 개정안은 다수 당사자간 장외거래¹⁾를 한국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일부 투자중개업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일의 당사자간 거래로 제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²⁾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장외거래 내용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외에, “그 밖의 거래”³⁾도 포함되도록 하고(안 제166조제1항),

1)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2. (생략)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0-12-1 또는 20-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3. (생략)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0-14-1 또는 20-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③ (생략)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4. (생략)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가 정한 투자자별 한도 이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3) ‘대차’ 등 매매 외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말함.

- 일정한 인가업무 단위 투자중개업자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업무단위 추가 절차 완화(제16조의2), 다른 금융업무 영위(제40조), 투자권유 위탁(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신용공여(제72조)⁴⁾ 등을 제한하며(안 제166조제2항), 일반투자자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금액 한도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66조제1항).

○ 다만, 개정안은 다수 당사자 간 장외거래가 허용되는 투자중개업자의 범위(안 제166조제1항제2호)와 업무단위 추가 절차 완화(제16조의2), 다른 금융업무 영위(제40조), 투자권유 위탁(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신

4)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⑩ (생략)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략)

제53조(검사 및 조치)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 ⑦ (생략)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용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용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용공여(제72조)의 적용을 제외하는 투자중개업자의 범위(안 제166조제 2항)를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에 규정 될 투자중개업자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위임 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서 다수 당사자간 장외거래가 허용되는 투자중개업자의 범위를 다 자간 장외거래를 인가업무 단위로 인가받은 자들로 구체화하고 있 고, 업무단위 추가 절차 완화, 다른 금융업무 영위, 투자권유 위탁, 신용공여를 제한할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 장외거래를 대상으로 인가업무 단위로 인가받은 자로 구체화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 여, 투자중개업자의 인가업무 단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예시하 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

＜ 수 정 의 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 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장외거래) ① 거래소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 결회사 외에서 이루어 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장외거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당사자 간에 거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66조(장외거래) ① --- ----- ----- ----- ----- ----- ----- ----- ----- ----- -----.

	1. (생략) 2.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인 경우</u> 3. (생략) ②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 받은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인가업무에 관련하여서는 제16조의2, 제40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③·④ (생략)	1. (원안과 같음) 2. 다자간 장외거래를 구성요소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 3. (원안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자의 그 인가업무에 대해서는 ----- ---. ③·④ (생략)
--	---	--

2. 시행일(안 부칙)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6조(장외거래)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50조제1항 단서의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파생상품등”으로 정비하고 시행하 위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정함.

< 수 정 의 건 >

개 정 안	수 정 의 건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u> <u>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제1조(시행일) -----, ---- <u>제50조제1항 단서</u> 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u>제166조</u> -----.

3. 일반투자자 장외거래 금액 제한에 대한 적용례

- 안 제166조제3항은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장외거래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류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의 25)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장외거래가 가능하고, 안 제166조의 시행이 1년간 유예되어 있어, 투자중개업자가 유예기간 중 일반투자자대상 장외거래를 인가업무 단위로 인가받을 수도 있는 점에서, 일반투자자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금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0-12-1 또는 20-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0-14-1 또는 20-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③ (생략)

액을 제한하는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장외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적용례를 둠.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신 설>	제2조(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 금액 제한 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장외거래를 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장외거래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안 제166조제2항은 일정한 인가업무 단위 투자중개업자의 장외거래
에 대해서는 업무단위 추가절차 완화(제16조의2),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0조), 투자권유 위탁(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신용공여(제72조)⁶⁾ 등

6)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투자매매
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
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⑩ (생 략)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
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업무
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
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인가업무 단위를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신용공여(제72조)를 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개정법률 시행 이후 해당 업무 관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개정법률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

개 정 안	수 정 의 건
부 칙	부 칙

4.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② ~ ④ (생 략)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한다)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② ~ ⑩ (생 략)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 략)

제53조(검사 및 조치)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 ⑦ (생 략)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용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용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u><신 설></u>	<u>제3조(장외거래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2조에 따라 신용을 공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6조제2항의 개정 규정(제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신용 공여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